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1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혜지,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이상욱,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황철규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삭제).
- 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된 시설들을 삭제함(안 제44조제6호 삭제).
-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라. 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함(안 제48조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마을공동체</u>”란 「<u>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4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6. 「<u>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u>」에 따른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동체시설</p> <p>제4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제2조(정의)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4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생략)

③·④ (생략)

제48조(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마을공동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삭 제>

<삭 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22.12.30.)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6호, 제47조제2항, 제48조)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